



의무보고규정 관련 BEPS 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국내외 입법동향

2016.09



CONTENTS

01. 도입 배경 1

02. 주요 권고사항 2

03. 국내 입법동향 3

04. 해외 입법동향 4

1. 의무보고규정 기도입 국가 4
2. 의무보고규정 입법 추진 국가 6
3. 요약 8

05. 요약 및 시사점 9

참고문헌 10

01 도입 배경

-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에 대한 포괄적이고 적시에 제공되는 정보의 부족은 모든 과세관청이 공통적으로 당면하는 주요 도전 중 하나이며, 이러한 정보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면 과세당국은 세원잠식의 위험에 보다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음¹⁾
- 이에 OECD는 Action 12에서 과세당국이 공격적 조세회피거래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획득할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‘의무보고규정(Mandatory Disclosure Rule)’ 도입을 권고함²⁾
 - 많은 나라의 과세당국은 다국적기업과의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다국적기업이 국제조세체계의 허점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움
 - 특히, 과세관할을 벗어나서 여러 국가에 걸쳐 이루어지는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 구조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Action 12 최종보고서는 의무보고규정(mandatory disclosure rules)의 주요 정책 목표와 제도의 설계 원칙에 대한 지침 및 권고사항을 제시함
 - 의무보고규정은 ‘선택적 도입’ 사항이며 BEPS 참여국이 이행의무를 지는 최소기준(minimum standard)에 해당하지는 않음
 - 현재 영국 등 의무보고제도를 시행중인 국가의 사례를 소개하며, 각국의 상황에 맞는 강제적 보고제도 도입을 권고함

1) OECD, *Mandatory Disclosure Rules, Action 12 - 2015 Final Report*, OECD/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, OECD Publishing, Paris, 2015., p.9. 세법연구센터, 「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」, 한국조세재정연구원, 2016에서 재인용.

2) 기획재정부 보도자료, 「BEPS 프로젝트 조치별 대응 방향(IV): 국제거래의 투명성 확보」, 2015.12.7.

02 주요 권고사항³⁾

- 의무보고규정은 잠재적인 공격적 또는 남용적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정보를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조세 투명성을 제고하고, 그러한 조세행위에 대해 보고의무를 지움으로써 공격적 조세회피를 사전에 억제(deter)하는 데 그 정책적 목표가 있음
- 의무보고규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는 신고대상자, 신고대상 정보, 신고시기, 미신고에 대한 처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, Action 12 최종보고서는 의무보고규정 설계와 관련하여 다음의 권고사항을 제시함
 - 납세자와 조장자(promoter, 조세자문가 등) 모두에게 보고의무를 지우거나, 납세자와 조장자 중 한쪽에 주된 보고의무를 부과함
 - 일반 특징분류기준(generic hallmarks)과 특정 특징분류기준(specific hallmarks)을 병행하여 의무보고 대상 거래나 계약을 설정함
 - 일반 특징분류기준은 조세자문 또는 거래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또는 할증수수료와 같이 조세회피전략의 일반적 특징을 기준으로 보고대상을 설정함
 - 특정 특징분류기준은 납세자의 지속적인 세무상 손실 등과 같은 특정한 고려사항을 기준으로 보고대상을 설정함
 - 조세전략의 사용자를 확인하는 것 역시 의무보고규정의 주된 목적 중 하나이므로, 신고된 조세전략과 의무보고를 수행한 조장자나 사용자를 연계하는 장치가 필요함
 - 주로 조장자에게 보고의무를 지우는 나라의 경우, 조세전략에 대한 식별번호를 도입하거나 국내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고객 명단을 제공하도록 함
 - 전략에 대한 보고의무가 조장자에게 있는 경우 의무보고 시기와 납세자가 그 조세전략을 활용가능한 시기를 연계하고, 그러한 보고의무가 납세자에게 있는 경우라면 의무보고 시기와 실제 시행 시기를 연계함
 - 의무보고규정의 준수 강화를 위하여 처벌규정(비금전적 처벌 포함) 도입

3) OECD(2015), Action 12, pp. 9~11. 세법연구센터, 「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」, 한국조세재정연구원, 2016에서 재인용.

03 국내 입법동향

■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의무보고규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입법계획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국제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다른 BEPS 관련 대응조치의 이행효과를 검토하여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됨⁴⁾

- 의무보고규정이 도입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조세회피 관련 정보를 적시에 획득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통해 조세회피행위에 이용되는 국제조세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조세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- BEPS 대응조치 중 국가별보고서(Action 13) 도입이 최소기준 과제로서 국내 입법이 진행 중이므로 급격한 납세협력비용 증가 및 국세청의 행정여력을 감안하여 도입 여부 및 시기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임
- 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, 해외 입법사례 조사 등을 통해 도입 여부 및 시기를 검토 중임

4) 기획재정부 보도자료, 「BEPS 프로젝트 조치별 대응 방향(IV): 국제거래의 투명성 확보」, 2015.12.7.

04 해외 입법동향

■ Action 12의 이행은 이미 관련 규정이 존재하는 영국 등의 일부 국가 외에 최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국가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됨

- 관련 규정이 이미 존재하는 국가로는 영국, 캐나다, 아일랜드, 포르투갈, 영국, 미국 등 6개국이 있음
- 이스라엘과 멕시코는 의무보고규정을 최근 입법하였으며, 호주, 프랑스, 브라질 등 소수 국가에서만 관련 입법 움직임이 확인됨

1 의무보고규정 기도입 국가

■ 기준에 의무보고규정을 도입한 국가로는 영국, 미국, 아일랜드, 포르투갈, 캐나다,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6개국이 있으며, 국가별로 보고의무자, 신고대상 거래 등에서 차이점이 존재함⁵⁾

- 미국은 1984년 최초 도입 후 2004년 개정함
- 캐나다는 1989년 최초 도입 후 2013년에 보다 포괄적으로 공격적 조세회피 거래를 신고하도록 개정함
- 영국은 2004년 도입 후 2006년과 2011년 중요한 개정 작업이 이루어짐
- 포르투갈은 2008년, 아일랜드는 2011년 관련 규정을 도입함

5) OECD(2015), Action 12, pp.24~25. 세법연구센터, 「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」, 한국조세재정연구원, 2016에서 재인용.

표 1 Action 12 의무보고규정 도입 국가의 제도 비교

	영국	미국	아일랜드
범위	소득세, 법인세, 양도소득세, 상속세 등	소득세(개인/법인), 상속 및 증여세, 기타 연방세	소득세, 법인세, 양도소득세, 부가가치세 등
의무보고 대상자	조장자 (사용자)	주요 조세자문가 납세자	조장자 (사용자)
의무보고 대상 거래	<p>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거래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아래의 특징분류기준에 해당할 것 ② 주요 목적 테스트: 거래의 주목적이 조세혜택을 제공 받는 것일 것 <p>- 일반 특징분류기준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1) 비밀보장거래 (2) 할증 수수료 (3) 표준 세무상품 <p>- 특정 특징분류기준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손실예상, 임대, 성과보수 등과 같은 위험성 있는 전략 	<p>다음에 해당하는 거래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국세청이 고시한 거래 ② 비밀보장 거래 ③ 보호 계약 거래 ④ 손실 거래 ⑤ 관심 대상 거래 	<p>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거래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아래의 특징분류기준에 해당할 것 ② 주요 목적 테스트: 거래의 주목적이 조세혜택을 제공 받는 것일 것 <p>- 일반 특징분류기준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1) 비밀보장거래 (2) 할증 수수료 (3) 표준 세무상품 <p>- 특정 특징분류기준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손실예상, 성과보수와 같은 위험성 있는 전략
	포르투갈	캐나다	남아프리카공화국
범위	소득세(개인/법인), 부가가치세 등	소득세(개인/법인)	소득세, 양도소득세, 부가가치세 등
의무보고 대상자	조장자 (사용자)	조장자	조장자 (사용자)
의무보고 대상 거래	<p>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거래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다음의 특징분류기준 (hallmark)에 해당할 것 ② 주요 목적 테스트: 거래의 주목적이 조세혜택을 제공 받는 것일 것 <p>- 일반 특징분류기준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조장자의 제한 조항 <p>- 특정 특징분류기준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1) 조세면제혜택을 받는 기업이 참여하는 거래 (2) 소득의 재분류를 야기하는 금융거래 (3) 세무상의 손실을 사용하는 거래 	<p>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거래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다음의 특징분류기준 (hallmark)에 해당할 것 ② 주요 목적 테스트: 거래의 주목적이 조세혜택을 제공 받는 것일 것 <p>- 특징분류기준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1) 할증 수수료 (2) 기밀유지조항 (3) 보호계약 	<p>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거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구체적으로 정의된 범주에 속할 것 ② 특징분류기준에 해당할 것 <p>구체적으로 정의된 범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1) 기간이 10년이상이라면, 혼성 지분상품으로 분류 될 거래 (2) 기간이 10년이상이라면, 부채로 분류될 거래 (3) 공시에 기재된 거래 <p>- 특징분류기준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세금혜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자, 수수료 등

자료: OECD(2015), Action 12, Annex E, 세법연구센터, 「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」, 한국조세재정연구원, 2016에서 재인용.

2 의무보고규정 입법 추진 국가

■ (호주) 호주 정부는 2016년 5월 3일 Action 12에 따른 의무보고규정 도입과 관련하여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문서⁶⁾를 발표함⁷⁾

- 본 협의문서는 Action 12의 권고사항과 그에 대한 정부의 현재 견해 그리고 의견수렴을 위한 질의를 포함함
- 의무보고규정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현재 발표되지 않음

■ (프랑스) 프랑스 국회는 2013년 12월 19일 의무보고규정을 포함한 2014년 예산안을 의결⁸⁾하였으나, 헌법재판소는 2013년 12월 29일 의무보고규정을 기각함⁹⁾

- 의무보고규정이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중대한 벌과금을 야기할 수 있는 데 반해 ‘조세전략(tax planning scheme)’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입법을 반대함
- 다만, 프랑스 국회가 2016년 중 의무보고규정 입법을 재추진할 가능성은 존재함¹⁰⁾

■ (이스라엘) 이스라엘 국회는 2015년 11월 30일 의무보고규정을 입법함¹¹⁾

- 이스라엘의 의무보고규정은 소득세와 법인세, 부가가치세, 소비세, 관세 등과 관련하여 2016년 이후 받은 “조세자문(tax advice)”과 납세자의 “보고대상 조세 결정사항(reportable tax position)”을 연말 세무신고 시 함께 보고하도록 함
 - 보고대상 조세자문: 자문료가 10만 이스라엘세겔(약 2.6만 미달러) 이상인 일반적

6) 호주 재무부, (http://www.treasury.gov.au/~media/Treasury/Consultations%20and%20Reviews/Consultations/2016/OECD%20Proposals%20for%20Mandatory%20Disclosure%20of%20Tax%20Information/Key%20Documents/PDF/OEC_D_proposals_mandatory_tax_disclosure.ashx) (접속일자: 2016.09.13.), 세법연구센터, 「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」, 한국조세재정연구원, 2016에서 재인용.

7) 호주 재무부, (<http://www.treasury.gov.au/ConsultationsandReviews/Consultations/2016/OECD-Proposals-for-Mandatory-Disclosure-of-Tax-Information>) (접속일자: 2016.09.13.), 세법연구센터, 「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」, 한국조세재정연구원, 2016에서 재인용.

8) EY, Global Tax Alert, (<http://www.ey.com/GL/en/Services/Tax/International-Tax/Alert-France-s-Parliament-approves-2014-Finance-Bill-and-Amended-2013-Finance-Bill>) (접속일자: 2016.09.13.), 세법연구센터, 「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」, 한국조세재정연구원, 2016에서 재인용.

9) EY, Global Tax Alert, (<http://www.ey.com/GL/en/Services/Tax/International-Tax/Alert-French-Finance-Bills-finally-enacted-but-certain-provisions-censored-by-the-Constitutional-Court>) (접속일자: 2016.09.13.), 세법연구센터, 「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」, 한국조세재정연구원, 2016에서 재인용.

10) Deloitte, BEPS Actions implementation by country – France, February 2016. (<http://www2.deloitte.com/content/dam/Deloitte/global/Documents/Tax/dttl-tax-beps-actions-implementation-france.pdf>) (접속일자: 2016.09.13.), 세법연구센터, 「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」, 한국조세재정연구원, 2016에서 재인용.

11) Israel – Reporting obligation on tax opinions introduced (22 Dec. 2015), News IBFD. (http://online.ibfd.org/document/tns_2015-12-22_il_1) (접속일자: 2016.09.13.), 세법연구센터, 「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」, 한국조세재정연구원, 2016에서 재인용.

조세자문(고객의 특별한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닌 다른 납세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자문)으로 자문을 받는 고객에게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문

- 보고대상 조세결정사항: 이스라엘 과세관청이 발표하는 세법해설에 부합하지 않은 세무처리나 결정으로 인한 조세혜택이 특정 연도에 500만 이스라엘세겔(약 1.3백만 미달러) 이상 또는 4개년 합산 1천만 이스라엘세겔(약 2.5백만 미달러) 이상인 경우

■ (멕시코) 멕시코 과세당국은 2014년 10월 2014년에 새로 도입된 의무보고규정 관련 보고대상 거래 목록을 발표함¹²⁾

- 멕시코의 의무보고규정에 따라 납세자는 이미 발생한 “주요 거래(transaction)”에 대하여 거래 발생 시점으로부터 30일 내에 보고하여야 함
- 보고대상 주요 거래는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
 - 금융거래
 - 자본거래와 거주지 이전
 - 기타 관련 거래
 - 이전가격거래
 - 조직구조 변경

■ (브라질) 브라질 정부는 2015년 7월 22일 의무보고규정 도입을 발표하였으나¹³⁾ 2015년 11월 17일 국회에서 부결되어 입법되지 못함¹⁴⁾

- 브라질 정부가 제시한 의무규정은 조세회피, 조세경감 또는 과세이연을 야기하는 조세전략을 연말 세무신고서와 함께 조세전략신고서(Tax Planning Declaration)에 보고하도록 함
- 보고된 조세전략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과소신고 또는 과소납부에 대한 이자만을 납부하도록 하여 의무보고 준수를 유도함
 - 브라질 과세관청이 미신고된 조세전략을 발견하는 경우 과소납부에 대해 최대 150%의 가산세를 부과함
- 의무보고규정이 국회에서 부결되었으나,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입법이 추진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¹⁵⁾

¹²⁾ EY, Global Tax Alert (<http://www.ey.com/GL/en/Services/Tax/International-Tax/Alert—Mexican-Tax-Authorities—is-sue—requirements—for—monthly—reporting—of—transactions—for—2014>) (접속일자: 2016.09.13.), 세법연구센터, 「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」, 한국조세재정연구원, 2016에서 재인용.

¹³⁾ EY, Global Tax Alert. (<http://www.ey.com/GL/en/Services/Tax/International-Tax/Alert—Brazil—uses—tax—losses—to—encourage—companies—to—settle—disputed—tax—liabilities—while—also—introducing—new—disclosure—requirement>) (접속일자: 2016.09.13.), 세법연구센터, 「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」, 한국조세재정연구원, 2016에서 재인용.

¹⁴⁾ EY, Global Tax Alert. (<http://www.ey.com/GL/en/Services/Tax/International-Tax/Alert—Brazilian—Congress—rejects—tax—planning—disclosure—requirements>) (접속일자: 2016.09.13.), 세법연구센터, 「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」, 한국조세재정연구원, 2016에서 재인용.

3 요약

표 2 주요국의 Action 12 이행현황

국가	이행현황
호주	논의 중
캐나다	기존재
프랑스	논의 중
아일랜드	기존재
이스라엘	2015년 입법 완료
멕시코	2014년 입법 완료
포르투갈	기존재
영국	기존재
미국	기존재
브라질	논의 중
남아프리카공화국	기존재

자료: OECD, Action 12; 각국의 재무부; IBFD; Deloitte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(상세 자료 출처는 위 본문의 각 국에 대한 각주 참조). 세법연구센터, 「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」, 한국조세재정연구원, 2016에서 재인용.

15) Deloitte, BEPS Actions implementation by country – Brazil, February 2016. (<http://www2.deloitte.com/content/dam/Deloitte/global/Documents/Tax/dttl-tax-beps-actions-implementation-brazil.pdf>) (접속일자 2016.08.10.), 세법연구센터, 「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」, 한국조세재정연구원, 2016에서 재인용.

05 요약 및 시사점

■ Action 12는 선택적 도입사항으로 의무보고규정의 주요 정책 목표와 제도의 설계 원칙에 대한 지침 및 권고사항을 제시함

- 의무보고규정은 잠재적인 공격적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정보를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조세 투명성을 제고하고, 그러한 조세행위에 대해 보고의무를 지움으로써 공격적 조세회피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
-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에 대한 포괄적이고 적시에 제공되는 정보의 부족은 모든 과세 관청이 공통적으로 당면하는 주요 도전 중 하나이며, 이러한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게 되면 과세당국은 세원감식의 위험에 보다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음

■ 우리나라에서는 의무보고규정 도입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, 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, 해외 입법사례 조사 등을 통해 도입 여부 및 시기를 검토 중임

- BEPS 대응조치 중 국가별보고서(Action 13) 도입이 최소기준 과제로서 국내 입법이 진행 중이므로 급격한 납세협력비용 증가 및 국세청의 행정여력을 감안하여 도입여부 및 시기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임

■ 기존에 의무보고규정을 도입한 국가로는 영국, 미국, 아일랜드, 포르투갈, 캐나다,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6개국이 있으며,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멕시코에서 입법됨

- 이 외에 호주, 프랑스, 브라질 등 소수 국가에서만 관련 입법 움직임이 확인됨

■ 의무보고규정은 선택적 도입사항으로 2016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국가별보고서 등 최소기준 이행 이후에 여러 국가에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으므로 해외 진출 국내기업은 각국의 입법동향을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음

- 의무보고규정은 다국적기업의 조세 투명성 제고와 공격적 조세회피행위 사전 억제 효과뿐 아니라, 과세당국이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도록 하여 조기에 필요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관련 입법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음

참 • 고 • 문 • 헌

기재부 보도자료, 「BEPS 프로젝트 조치별 대응 방향(IV): 국제거래의 투명성 확보」, 2015.12.7.
세법연구센터, 「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」, 한국조세재정연구원, 2016.

Israel – Reporting obligation on tax opinions introduced (22 Dec. 2015), News IBFD.
OECD, *Mandatory Disclosure Rules, Action 12 – 2015 Final Report*, OECD/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, OECD Publishing, Paris, 2015.

기획재정부, www.mosf.go.kr
한국조세재정연구원, www.kipf.re.kr
호주 재무부, www.treasury.gov.au
OECD, www.oecd.org
KPMG, www.kpmg.com
EY, www.ey.com
Deloitte, www.deloitte.com
PwC, www.pwc.com
IBFD, www.ibfd.org

**의무보고규정 관련 BEPS
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
국내외 입법동향**